

의안번호	2208797
의 퇴 인	이학영 의원
회 답 일	2025.5.13.
추 계 번호	25B1451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8,200만원(연평균 1억 1,64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—	0	—	—	582	582	116.4

주: 1.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
 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)	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“고용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<u>3년마다</u>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실태조사)	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<u>3년마다</u>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)	○	—
2	안 제6조(실태조사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고용노동부는 현행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임
- (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) 개정안은 현행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¹⁾에 따른 “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”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임
 - (용역비용) 고용노동부는 “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(2023~2027)”의 수립을 위해 2022년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므로, 2022년 정책연구용역

1) 제5조(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"고용정책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비용을 토대로 산출

- 조사개요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, 이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 등 기초 연구를 수행
- 수행기관: 한국교원대학교
- 소요재정: 2022년 기준 4,700만원
- (용역주기) 개정안의 부칙²⁾은 개정안의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시행 주기도 2027년(2022년+5년) 이후 3년 주기로 변경되는 것으로 추계
 - 현행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5년 후인 2027년(2022년+5년), 2032년(2027년+5년)에 시행됨
 - 2022년 정책연구용역 비용이 추계기간(2026~2030년)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개정안(A)	—	47	—	—	47	94	18.8
기준선(현행, B)	—	47	—	—	—	47	9.4
추가재정소요(A-B)	—	0	—	—	47	47	9.4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실태조사) 개정안은 현행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6조³⁾에 따른 “사회적기업 실태조사”의 시행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임

- 현행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1조⁴⁾는 동법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동 조항에 근거하여 202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는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⁵⁾

2) 안 부칙 제2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3) 제6조(실태조사)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4) 제21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

2.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

3.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(受理)

4.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

사업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출연됨

- (조사비용)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시행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비용을 토대로 산출
 - 조사개요: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
 - 수행기관: 한국노동연구원
 - 소요재정: 2022년 기준 5억 3,500만원
- (조사주기) 개정안의 부칙⁶⁾은 개정안의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(2022년+5년) 이후 3년 주기로 변경되는 것으로 추계
 - 현행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는 5년 후인 2027년(2022년+5년), 2032년(2027년+5년)에 시행됨
 - 본 추계서는 2022년 시행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이 추계기간(2026~2030년)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개정안(A)	—	535	—	—	535	1,070	214.0
기준선(현행, B)	—	535	—	—	—	535	107.0
추가재정소요(A-B)	—	0	—	—	535	535	107.0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추계결과,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5억 8,200만원으로 추계됨

5) 코드 1037-311

6) 안 부칙 제2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안 제5조(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, A)	—	0	—	—	47	47	9.4
안 제6조(실태조사, B)	—	0	—	—	535	535	107.0
추가재정소요(C=A+B)	—	0	—	—	582	582	116.4

주: 1.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
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
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